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명	개선제안 검토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등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음 ①, ②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①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또는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3.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근무기간은「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됨.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624,660원(세전) / 급식비 140,000원

○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01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 예정일
5. 2.(화) ~ 5. 15.(월)	1차 (서류심사)	-	-	5. 17.(수)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 1(早)
	2차 (면접시험)	5. 23.(호)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5. 25.(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 1.(목)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2차 :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5. 2.(화)~2023. 5. 15.(월)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jungbi2@korea.kr)만 가능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나. 서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붙임 1~5 양식) 각 1부
 - * 서명란 부분 서명 필수(서명 누락 시 미제출과 같게 처리)
 - ②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①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1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응 시 원 서</u>

공통 사항										
정	명				접) 무번호		* 00	시자가 기재하	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전지				가우편						
자격	기준		□ 변호사	□ 법학전문 성	석사 (기상의 현	학위 <i>:</i>	소지계	다	
학			재학기	간 :		전공(학과) 수		학 구분 학위		
 력		4	20.07.01.~'	20.07.01		00학과 졸업 4			석사	
사										
항										
	구분				자격 취득(예정) 일자					
자 격										
·										
경력	경력 사항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직 장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담당 업무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u>자 기 소 개 서</u>

성 명 :
1. 법제처와 해당 모집 직무분야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
2.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사례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2. 약 6 한 기위 달 6 글 한 기대 대 대 에 기골에 기계고.
3. 모집 직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4. 조직생활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에 비추어 기술해 주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갈등의 대상인 상대방을 설득한 과정과 방법 등 기술)					
5.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힘들었던) 상황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상					
황을 해결했는지 기술해 주세요.					
2023년 월 일					
작 성 자 : ㅇㅇㅇ					
《 기조과게 출시되여.하고 드 TI의TA에 대하 부피O하 서이겨의 아 스 이트 IN요A					

- ※ 가족관계, 출신지역·학교 등 지원자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불이익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크기 12p, 줄간격 160%)

직 무 수 행계획

성명 :
내용 :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글자크기 제목 13p, 본문 12p, 줄간격 160%)

【작성요령】

시험공고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퉁의서〉-

법령정비 사업 계약직 연구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 보를 수집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자격사항, 병역사항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웅시원서 접수일부터 채용절차 마감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5호>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9.1.>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ਨੇ ਹੈ ਹੈ ਨੇ		해당여부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7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 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인)법제처장 귀하